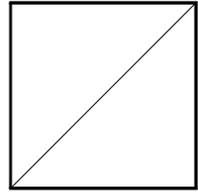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1. 7. (임시 제 1 차)	

금융감독원 감사 임명제청(안)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고 승 범
제출 연월일	2022. 1. 7.

1. 의결주문

- 김기영('67. 1. 5. 生)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『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감사 임명제청(안)을 의결하고자 함

3. 임명제청(안)

성 명 (한 자)	생년월일	제청 직위	비 고
김 기 영 (金 琪 泳)	1967. 1. 5.	금융감독원 감사	임기 3년

* 현재 공석(김우찬 前 감사 '18.3.12. ~ '21.3.11., 임기만료)

4. 참고사항

- 이 력 서 : 별첨 1
- 관련 법령 : 별첨 2

< 별첨 1 >

이 력 서



□ 성 명 : 김기영 (金琪泳)

□ 생년월일 : 1967. 1. 5.

□ 학 력

- 1985. 남대전고등학교
- 1990.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
- 1992.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료
- 2006. 영국 엑시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

□ 주요경력

- 1991. 행정고시 합격(35회)
- 1998. 감사원 근무
- 2007.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총괄과
- 2009. 감사원 공보관실 공보담당관
- 2009.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5과장
- 2010. 감사원 지방특정감사단 제1과장
- 2011.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장
- 2014.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
- 2015. 서울특별시 감사관
- 2015.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
- 2017.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
- 2018.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
- 2019. 감사원 기획조정실장
- 2020.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

< 별첨 2 >
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
제29조 (집행간부 등)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, 부원장 4명 이내,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(이하 “부원장”이라 한다)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,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(이하 “부원장보”라 한다)는 원장이 임명한다.

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
⑤ 원장·부원장·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원장·부원장·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,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행정인사과	인적자원개발실
연 락 처	02-2100-2750	02-3145-5470